

##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	1989. 12. 26	조례 제 577호
개정	1990. 12. 31	조례 제 627호
	1996. 10. 11	조례 제 961호
	2003. 11. 18	조례 제1326호
	2004. 9. 21	조례 제1356호
	2008. 6. 16	조례 제158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)
	2010. 3. 26	조례 제1720호
일부개정	2014. 8. 22	조례 제2010호(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6. 9. 26	조례 제2195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7. 3. 12	조례 제2243호(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7. 6. 20	조례 제2265호(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단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 례 등 일부개정조례)
일부개정	2018. 7. 31	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19. 6. 25	조례 제2492호(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)
일부개정	2020. 3. 25	조례 제2584호(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)
일부개정	2020. 6. 19	조례 제264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96. 10. 11, 2008. 6. 16>

제2조(시설의 명칭 및 사업내용) 광명시사회복지시설(이하 “사회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·철산종합사회복지관·하안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.
2.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
  - 가. 지역 내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관리대상자 발굴, 개입 서비스 연계 등 사례 관리
  - 나. 지역 내의 가족기능강화, 지역사회보호, 교육문화,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
  - 다. 지역 내의 복지네트워크구축, 지역주민조직화, 자원개발 및 관리 등의 지역조직화
  - 라.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

[전문개정 2020. 6. 19]

제3조(위치) 사회복지관의 위치는 광명시 관내로 제한한다.

제4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시장은 신청자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로 지정한다.

② 제1항의 신청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. <개정 96. 10. 11>

제5조(위탁기간)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명시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6. 20>

[전문개정 2010. 3. 26]

제6조(시설의 운영등)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운영경비)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, 인건비, 관리비등 운영경비를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하여 보조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6. 16, 2016. 9. 26>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자체부담 능력이 있어 보조금의 교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25>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지도·감독 요강 등에 의거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되, 사회복지관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를 하고,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탁자의 의무)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운영비로 충당

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3. 25>

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·증축 또는 증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4. 8. 22>

⑤ 수탁자는 사회복지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6. 16>

제10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7. 31>

1.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4.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
제11조(위·수탁 협약의 체결)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17. 3. 12>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0. 3. 25>

##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시민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 관한 조례(조례 제403호, 1986. 11. 10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칙 <1990. 12. 3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10. 1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

부칙 <2003. 11. 18>

이 조례는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4. 9. 21 조례 제135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6. 16 조례 제158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3. 26 조례 제172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8. 22 조례 제2010호,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국가보훈  
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9. 26 조례 제2195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 
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3. 12 조례 제2243호,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광명시  
하수도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6. 20 조례 제2265호, 자치법규 일체정비에 따른 재단  
법인 광명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 
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9. 6. 25 조례 제2492호,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3. 25 조례 제2584호, 용어의 순화를 위한 광명시  
조례 일괄정비 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 6. 19 조례 제2640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